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6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2.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관련 조문별 검토	14
가.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14
나. 폭언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 처리	18
다. 정보공개 및 우송 등 비용 사전 납부	22
3. 알권리 보장 관련 조문별 검토	26
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구체화	26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구체화 및 의무 위반시 벌칙	31
다.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징계	39
라.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강화 등	42
마. 정보목록 작성·비치해야 하는 정보 명확화 등	45

바.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49
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방식 변경(정보 소재 안내 → 직접 공개로 전환)	59
아.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에 설치되는 정 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 조정	63
자.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생략 요건 강화	70
차.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조정 활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7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7.
3. 회부연월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제도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반복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담당자의 고초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 나. 정보공개청구의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 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마. 공공기관의 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4 신설).
- 바.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추가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비하고,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함(안 제9조).

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차. 공공기관이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2조제1항).

카. 공공기관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및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함(안 제12조제3항).

타.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및 단순·반복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하.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

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너. 정보의 허위 통지, 거짓 및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의 고의적 정보 공개, 공개 대상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정보공개 의무의 불복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¹⁾²⁾

우리나라는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을 제정³⁾한 이후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⁴⁾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쳐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지원⁵⁾하고,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원문을 공개⁶⁾하는 등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1)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중심으로」,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1998.1.1. 시행

4)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선제적·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왔음.⁷⁾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 1996.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행정정보 공표 등 전면개정)
- 2006.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공개)
- 2008.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2013.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원문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
- 2016.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조서 서명 허용: 기명날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2020.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소속) 등
- 2023.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자료: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음.⁹⁾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p.4. 참고

9)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 참고

[정보공개청구 오남용 행태]

부문	요인(원인)	변수(오남용 형태)
법·제도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	대량청구
		과다청구
		반복청구
		범위과도
		기간과도
		중복청구
		무관청구
	오남용 관련 조항	경제적 사익추구
		무형적 사익추구
		보복성 청구
		민원청 청구
		위협/비방
	불복절차 관련 조항	불복구제절차 남용
운영	수수료 규정	청구 후 미수령
		청구 후 취하
홍보	제도 이해	단순 질의
		제도 오해

자료: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중심으로」,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

부문	요인(원인)	변수(오남용 형태)
법·제도	정보부존재 처리 관련 조항	임의적 부존재처리
		고의적 부존재처리
		정보 미생산 또는 미등록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조항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허위통보
		중요내용 누락
		포괄적 회피
		고의적 부분공개
		근거제시 미흡
		분리공개 미이행
		고의적 공개회피
		고의적 공개지체
		고의적 정보왜곡
운영	교육	전문성 미흡
		정보공개 전문인력/전담조직 부재
		전문기관 부재
	운영	처리기한 경과
		청구처리 지연
		공개방법 변경
		제공형태 변경
		정보 미가공
		임의적 종결처리
		이송의무 불이행
조직문화	제도 이해	취하 종용
		취하 종용 후 회유
		심리적 압박/훈계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자료: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비공개 건수는 2019년 46,560건 → 2020년 44,473건 → 2021년 47,016건 → 2022년 48,295건 → 2023년 61,113건으로 5년 새 31.3% 증가하였음.

또한 비공개 사유로는 2023년 기준 개인정보보호가 9,238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재판 관련 정보 10,524건(17%),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 8,800건(14%), 법령상 비밀·비공개 7,609건(13%) 등임.

【최근 5년간 비공개 사유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2023년	61,113	7,609	1,075	1,688	10,524	9,238	20,751	8,800	1,428
	(100)	(13)	(2)	(3)	(17)	(15)	(34)	(14)	(2)
2022년	48,295	6,435	778	942	8,767	7,250	15,781	7,381	961
	(100)	(13)	(2)	(2)	(18)	(15)	(33)	(15)	(2)
2021년	47,016	5,901	995	717	7,521	9,138	14,723	6,913	1,108
	(100)	(13)	(2)	(2)	(16)	(19)	(31)	(15)	(2)
2020년	44,473	5,389	1,023	681	5,935	10,045	12,427	7,780	1,193
	(100)	(12)	(2)	(2)	(13)	(23)	(28)	(17)	(3)
2019년	46,560	7,842	950	855	5,382	10,623	12,274	7,479	1,155
	(100)	(17)	(2)	(2)	(12)	(23)	(26)	(16)	(2)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①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¹⁰⁾,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¹¹⁾,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¹²⁾, 정보목록을 작성·비치¹³⁾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② (생략)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¹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되 법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을 마련하며,

비밀·비공개, 국가안전보장, 재판·범죄예방·수사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¹⁵⁾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

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④ (생략)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생략)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을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질적 악성 정보 청구 등 정보공개 제도의 오남용 행태로 인해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과중함 부담이 되고 다른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비고
제6조의4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공공기관의 장의 보호 조치 의무 등 규정)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측면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에 대한 대책)
제11조의3	폭언 등 수반 정보공개 청구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종결 처리	
제17조제3항	정보공개 및 우송 등 비용 사전 납부	
제4조제2항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권리 보장 등 측면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대책)
제4조제3항	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구체화	
제6조의2 및 제30조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구체화 및 위반 시 벌칙	
제 6조의3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및 정보공개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조항	주요 내용	비고
및 제22조제6호	의 징계 요구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강화	
제8조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정보 구체화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제11조의2제2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 공개 방식 개선(해당 정보 소재 안내 → 직접 공개)	
제12조제3항	비밀·비공개, 국가안전보장, 재판·범죄예방·수사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 상향(3분의 1 이상 → 3분의 2)	
제18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명확화	
제23조의2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활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관련 조문별 검토

가.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인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 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회규칙·

현행	개정안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인 등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인바,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 처리법」”) 제4조¹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법」과의 유사 사항을 정리하면, ① 공공기관의 장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 부과, ②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조치 요구, ③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 금지 등임.

다만, 개정안은 「민원처리법」과 달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이라는 표현을 차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98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상 사용목적¹⁷⁾이 있었으나, 2004년 전부개정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1998.1.1. 시행)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請求人”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¹⁸⁾됨으로써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반복 청구”에 대하여 현행법 제11조의²¹⁹⁾에서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vs 「민원처리법」 제4조】

개 정 안	「민원처리법」
제6조의4(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제1항- ○공공기관의 장: 정보공개 청구인 등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4항-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2항- ○행정기관의 장: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2항- ○정보공개 담당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3항- ○민원 처리 담당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3항- ○공공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제4항- ○행정기관의 장: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②·③ (생략)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 2004.1.29.. 전부개정, 2004.7.30. 시행)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③ (생략)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생략)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⁰⁾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및 중복 규정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¹⁾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전번호 10-0055).

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890호, 정부제출, 2024.10.24.

나. 폭언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 처리

개정안은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u>정보공개 여부</u>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제11조의3(폭언 등을 수반한 청구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u>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u> 등을 수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 ----- ----- ----- -----정보공개 여부 및 제11조의3에 따른 업무 종결 처리 등----- -----, ----- -----

현행	개정안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 ----- ----- -----.

최근 5년간(2019~2023년도)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는 2019년 38,054건에서 2021년 51,883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37,655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은 2019년 32,312건에서 2023년 33,160건으로, 협박은 2019년 2,353건에서 2023년 3,150건으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폭언·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기타
2019	38,054	32,312	2,353	323	216	32	2,818
2020	46,079	34,878	5,868	116	381	86	4,750
2021	51,883	39,988	6,895	146	876	92	3,886
2022	41,559	36,180	3,829	363	439	69	679
2023	37,655	33,160	3,150	297	346	56	646

주) 기타는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임.

자료 : 행정안전부

더욱이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명사고 등도 발생하고 있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²²⁾이 제기되는 있는 가운데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²³⁾

이를 반영하여 안 제6조의4는 정보공개 청구인 등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안 제11조의3은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이 수반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²⁴⁾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22) “악성 민원 사망’ 김포시 공무원…순직 인정”, 인천일보, 2024.12.04., “죽음까지 내몬 악성민원…부산도 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국제신문, 2024.4.15., “‘악성 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보호할 대책 없나?”, YTN, 2024.3.11., “‘악성민원’ 받은 뒤 공무원 숨져...보호대책은?”, KBS, 2024.3.11.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23)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4.25.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생략)

록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의4와 연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종결 처리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절차 통해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자 보호조치가 가능하고, 폭언 등을 수반한 청구의 종결 처리에 각 건마다 모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경우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욕설·협박 등 폭언, 모욕 등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⁵⁾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해 보임.

2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890호, 정부제출, 2024.10.24.

다. 정보공개 및 우송 등 비용 사전 납부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후 정보의 공개·우송에 드는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 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 -----.

현행법 제17조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은 관련 비용(수수료 및 우편요금) 중 수수료를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⁶⁾

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수수료 미납 현황을 살펴보면, 미납 건수는 연간 약 40,056~64,974건(연간 수수료 발생 청구 건수의 23.7~27.6%)이고, 2023년도 미납건수는 64,974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함.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⑥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주: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를 예시함. 그 외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 에 대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

【연도별 수수료 발생 및 미납 등 건수(2020~2023년)】

(단위: 건, %)

구분	연간 청구	수수료 발생(A)	수수료 미납 건수			
			결정통지 후 청구 취하	미납으로 보류*	10일 초과 종결**	합계(B) (비율: B/A)
2023년	1,842,358	269,581	115	32,800	32,059	64,974 (24.1)
2022년	1,802,099	221,117	71	27,373	26,76	54,205 (24.5)
2021년	1,564,665	187,345	32	22,489	21,908	44,429 (23.7)
2020년	1,286,108	144,949	15	20,496	19,545	40,056 (27.6)

주1. 미납으로 보류: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중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류

2. 10일 초과 종결: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중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자료: 행정안전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 청구 건에 대한 자료임)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 후 답변자료를 미수령한 행위는 해당 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다른 정보공개 청구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정보공개 준비로 인한 행정력 및 국민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²⁷⁾

27) 유사 입법례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

다만, 개정안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령²⁸⁾에서는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따른 감면 사항도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생략)

3. 알권리 보장 관련 조문별 검토

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구체화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배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정보를 국외·북한,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내란·군사기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국제해킹 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u>법령</u> 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 ----- <u>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u> -----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u>기관</u> 에서 <u>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u>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u>기관이</u> <u>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u>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u> 2. <u>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사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u>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4.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5.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현행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²⁹⁾

개정안은 법 적용 배제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법 및 개정안의 적용 제외 대상 정보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대상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미적용 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2.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사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4.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현행법	개정안
		에 관한 정보 5.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단서 규정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적용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적용

다만,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³⁰⁾ 중 제1호의 직무에 관한 사항만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는 헌법 및 판례 등과 달리

30)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 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국가안전보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정보원 및 타 관련 기관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다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보공개법」에서만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고, 안 제6호에서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한정적인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수많은 공개 대상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종합되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구체화 및 의무 위반 시 벌칙

개정안은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 고의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 결과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각 호 및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u>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신설></u>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u> 2. <u>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u> 3.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4.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u>제6장 벌칙</u>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한 경우 2. 제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한 경우 3.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한 경우 4. 제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현행	개정안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매년 약 137만~182만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며 이 중 약 84만~108만 건을 처리³¹⁾하고 있는데, 처리 건 중 전부공개 비율은 74~82%, 부분공개 비율은 13~20%, 비공개는 5~6% 수준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2019~2023년)】

(단위: 건, (): %)

구분	청 구	처 리			
		처리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23년	1,842,358	1,078,599 (100)	799,366 (74)	218,120 (20)	61,113 (6)
2022년	1,818,425	882,693 (100)	662,696 (75)	171,702 (20)	48,295 (5)
2021년	1,642,959	891,831 (100)	690,554 (78)	154,261 (17)	47,016 (5)
2020년	1,367,166	836,080 (100)	670,086 (80)	121,521 (15)	44,473 (5)
2019년	1,439,415	846,953 (100)	690,557 (82)	109,836 (13)	46,560 (5)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 구제 절차³²⁾도 두고 있는데,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

31) 청구 건수와 처리 건수의 차이에 대하여,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정보부존재, 민원으로 처리, 취하, 종결, 이송 등으로 기술하고 있음.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2019년 이후 연간 약 8,500~11,400건이 신청되어 약 2,900~3,900건이 인용되고, 행정심판은 연간 약 1,100~5,400건이 신청되어 약 206~320건이 인용되며, 행정소송은 연간 190~263건이 신청되어 약 50~70건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2019~2023년)】

(단위: 건, (): %)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	처리결과			계	계류 중	처리결과			계	계류 중	처리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2023	11,423	2,395	5,081	3,947	5,366	119	4,498	522	227	187	101	37	9	40
	(100)	(21)	(44)	(35)	(100)		(86)	(10)	(4)	(100)		(43)	(10)	(47)
2022	8,704	1,887	3,955	2,862	3,579	228	2,421	688	242	230	94	51	19	66
	(100)	(22)	(45)	(33)	(100)		(72)	(21)	(7)	(100)		(37)	(14)	(49)
2021	9,182	1,732	4,276	3,174	1,146	103	459	334	250	241	105	36	43	57
	(100)	(19)	(47)	(34)	(100)		(77)	(32)	(24)	(100)		(26)	(32)	(42)
2020	8,502	1,559	3,830	3,113	3,064	181	2,096	466	321	263	120	59	21	63
	(100)	(18)	(45)	(37)	(100)		(73)	(16)	(11)	(100)		(41)	(15)	(44)
2019	8,800	1,605	3,953	3,242	5,017	250	3,574	987	206	249	107	56	38	48
	(100)	(18)	(45)	(37)	(100)		(75)	(21)	(4)	(100)		(39)	(27)	(34)

자료: 행정안전부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이처럼 청구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고 있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의 경우에도 불복 구제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보공개제도를 국민 중심보다 행정편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
는 기관들이 있고, 해당 기관의 비밀 유지를 강조하여 정보공개제도를
경시하거나 임의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³³⁾

이에 개정안은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 고의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 결과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
실을 알면서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
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및 법적 이행령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
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형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안 제30조와 안 제6조의3은 서
로 호응하지 않고 있음.

안 제6조의2는 정보처리 담당자에 대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30조는 정보처리 담당자의 위반행위를 승인한 사람을 처벌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형식상 양벌규정³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33)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4권제1호, pp.121~146. 참조

34)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

고, 법제실무상 양벌규정을 둘 때에도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전제로 함.

안 제30조는 안 제6조의2의 법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자가 아닌 위반행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공공기관³⁵⁾의 정보공개 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423)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법제기군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p.796.)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현행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정보공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에 개정안이 추가적인 불복 구제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앞에서 언급된 통계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연간 약 10,600~17,000건의 불복 신청이 있는데, 개정안이 불복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형량과 관련해서는 형량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금지의무 및 위반행위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⁶⁾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해 보임.

36)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44호, 2024.7.29. 발의

【개정안 vs 황운하의원안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벌칙】

구 분	개정안	황운하의원안
금지행위	1.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	-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3.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2.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
	4.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처벌 대상	금지행위를 승인한 사람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형벌 규정은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바, 행정상 징벌로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징벌을 제재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고, 악성 청구인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형사 고발 등을 구실로 위협을 가하는 현실에서 별도의 벌칙·징계조항 신설 시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공무원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처리 철자를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 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행위,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정보공개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관련 조문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2.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3.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경우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u><신설></u>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 6호와 같음)

개정안은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의 지연, ② 청구의 취하 회유, ③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정보공개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엄격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에 징계권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보공개위원회로부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위반자의 징계 권한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담당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시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감사 청구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 등을 통해 담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강화 등

개정안은 감사·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위원회는 제외)를 사전적 정보공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 ----- ----- ----- ----- ----- ----- ----- -----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1. <u>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u>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2. (현행과 같음)
3. 예산집행의 내용과 <u>사업평가 결과</u>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	3. ----- <u>사업평가</u> <u>· 감사·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u>

현행	개정안
요한 정보 <신 설>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u>행위를 한 공무원·임직원</u>에 대한 징계 결과(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 4. <u>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정보.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제외한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는 정보공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항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1항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1항제4호)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

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행정정보의 공표 제도 시행 이후³⁷⁾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유지하여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게 사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감사·징계결과 등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 관련 정보는 자유로운 의사교환 제한, 공정성·객관성 저하,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로비나 견제 등으로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 위원회 회의도 있으므로 확실적인 공개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7호, 2004.1.29. 전부개정, 2004.7.30. 시행)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정보목록 작성·비치해야 하는 정보 명확화 등

개정안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의 정보목록 비치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 설></u>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정보----- ----- ----- ----- ----- ----- -----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되, 그 분리 및 제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제목, 생산·접수일,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 정보의 공개구분, 보존기한, 단위과제명 등이 포함된 문서의 목록 2. 정보의 보유 및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이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항목명이 포함된 목록
<u><신 설></u>	

현행	개정안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8조는 공공기관에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정보공개 목록 중 현행법 제9조제1항38)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

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한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보유·관리 문서들을 정보목록에 포함해야 하고,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³⁹⁾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④ (생략)

39) 현행법도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자의적 운영, 소극적 정보공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수립 및 공개,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도 총괄 등)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

이에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및 정보목록에의 포함 여부가 공공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항목으로 정보목록을 생산·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보목록의 각 항목별로 공개/비공개 여부를 나누어 관리하거나 분리·편집하는 것이 현행 문서관리시스템상 불가능하며, 또한 비공개 대상 문서는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로서 그 목록의 공개 여부도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정보의 존재 자체가 보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보목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외국과 상호 합의한 정보 및 의사결정·내부 검토 목적의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진행 중 재판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증언·변론 등을 방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구분하는 등 현행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u>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u> <u><신설></u>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u>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u>	2. <u>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u>----- ----- ----- 2의2. <u>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외국과 상호 합의한 정보 및 의사결정·내부검토 목적의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u> 3. (현행과 같음) 4. -----<u>정보</u>로서 증언·변론 등을 방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 ----- -----

현행	개정안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u><신 설></u>	----- ----- 4의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5. ----- ----- <u>사항으로서</u>----- ----- ----- ----- ----- <u><단서 삭제></u>

현행	개정안
<u>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6.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2호)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8

가지 유형(제1호부터 8호까지)으로 규정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현행법은 정보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가능 정보 중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제4호(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에 더하여 안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음에도 단순히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비공개 가능 정보 비교(현행 제2·4·5호 관련)】

현행	개정안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 제2호-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분리 및 구체화
	-안 제2호의2-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외국과 상호 합의한 정보 및 의사결정·내부검토 목적의 정보 등 ⇒ →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분리 및 구체화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안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 → 증언·변론 등을 방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분리 및 구체화
	-안 제4호의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분리 및 구체화

현행		개정안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u>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u>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u>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	⇒	-안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u>사항으로서,</u>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서 삭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 관련 비공개 가능 사유 삭제

주) 음영 부분: 현행 및 개정안의 유사한 내용을 같은 색의 음영으로 구분하여 표시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는 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범위를 일부분에 한정·나열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판례에서 정의하는 범위보다 축소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외교관계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이후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일·외교관계 저해 및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이익과 영향을 개별 사항별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재판과 범죄수사·형집행 등의 사항이 같은 호로 규정된 것은 각각 직무수행 및 공정

재판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분리·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항 안 제5호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청구인에게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미확정 자료 공개 이후 해당 내용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을 저해하여 정책·사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등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전체적 안보전략 및 외교정책, 국제관계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군사기밀 관련 예시 항목으로 국한될 우려가 없도록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공개 방식 변경(정보 소재 안내 → 직접 공개로 전환)

개정안은 이미 공개된 자료는 그 자료의 위치를 직접 안내하고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청구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u>제7조제1항40)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u> 2. <u>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u>	② ----- ----- -----<u>다른 법령</u> <u>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u> <u>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u> <u>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u> <u>우에는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u> <u>청구하도록</u>----- -----. <삭 제> <삭 제>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생략)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오·남용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단순히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정보통신망 등의 명칭만을 안내⁴¹⁾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에 해당 정보가 분산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본래 청구했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등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소재를 안내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안내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청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등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정보

41) ‘인터넷 사이트 안내 조치’를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 중 하나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음.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공공기관별로 정보의 소재를 어느 수준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에 따라 비정보취약계층일지라도 복잡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개한 자료는 자료의 위치를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아.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 조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u>정보공개여부</u>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 ----- ----- ----- -----정보공개 여부 및 제11조의3에 따른 업무 종결 처리 등-----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단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2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⁴²⁾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⁴³⁾(이하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⁴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되,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⁴⁵⁾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⑥ (생략)

4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략)

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생략)

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하는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은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정(1996년) 당시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⁴⁶⁾ 2004년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규정되었고, 이후 2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등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는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로, 국가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는 1인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음.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④ (생략)

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 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개정 연혁】

구 분	1998.1. ~2004.7.*	2004.7. ~2013.11.	2013.11. ~2021.12.	2021.12.~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2조제3항 <u>본문</u> 규정)	필요한 경우 위촉 가능 ※시행령에 규정	1/2	1/2	2/3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제12조제3항 <u>단서</u> 규정)		1인 이상	1/3 이상	1/3 이상

주) 1998.1.~2004.7: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적정 비율의 내부와 외부 인사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회가 국가기관등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됨.⁴⁷⁾⁴⁸⁾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경우, 2명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면 전체 5명 중 3명이 내부 인사로 채워지고,

47)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개정판), 행정안전부, 2021.8. p. 44.

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127호, 2004.1.29. 전부개정, 2004.7.30.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370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21호, 제2104039호)에 대한 검토보고 참고

6명으로 구성된 경우, 2명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면 전체 6명 중 4명이 내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등 다른 국가기관등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와 비교해 볼 때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의 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현행 “3분의 1 이상” → “3분의 2”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같은 내부 및 외부 위원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기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의 인적 구성에 있어 내부 및 외부 간 균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의 편향성 및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정보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재판·수사·교정기관의 경우 중대하거나 민감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주로 다루게 되므로 외부 위원에 의한 편향된 결론 또는 외부 유출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국방 관련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운영하는 국방부 소속기관들은 도심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특히 최전방부대의 경우 지역 내 적절한 외부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 및 내용 대부분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기밀성 및 보안이 우선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위원의 수를 공공기관들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자.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생략 요건 강화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로 현행법상 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후 1년 이내”를, 단순·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현행	개정안
1. <u>심의회</u>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u>청구</u>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1. <u>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u>----- 2. -----<u>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u>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8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⁴⁹⁾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의신청 시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더라도 심의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된 정보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공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단순·반복적인 청구는 어떠한 청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기관등의 자의적 법집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심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심의회를 거친 지 1년 경과”에서 “1년”이라는 기간 설정이 적절한 것인지와 단순 청구에 대하여 모두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심의회 재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단순·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축소되어 불필요한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심회의 개최 증가
로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차.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조정 활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개정안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 활동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 ⁵⁰⁾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26조⁵¹⁾ 및 이 법 시행령 제29조⁵²⁾에 따라 행정안전부장은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⁵³⁾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행정안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3)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2023.1.1.~2023.12.31.) 목차

-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의의 2. 추진경과 3. 주요내용 4.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5. 운영성과 6. 발전방향
-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배너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해서도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

-
- 1. 정보공개 운영현황(2023.1.1.~2023.12.31.) 2. 정보공개 종합평가(2022.9.1.~2023.8.31.)
 -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4. 공공기관
 -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 1. 행정소송 판례 2. 행정심판 재결례 3. 이의신청 주요사례
 -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 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 4. 원문공개 운영 현황
 - 제6장 관련 법령